정 관

-목 차-

제1장 총 칙 9	제5장 위원회	18
제1조 명칭	제31조 위원회 등	
제2조 목적	제6장 직제, 직원 및 급여	18
제3조 소재지	제32조 직제	
제4조 사업	제33조 직원의 임면	
제2장 임 원 10	제34조 급여	
제5조 임원	제35조 운영규정	
제6조 이사의 선임	제7장 보 칙	19
제7조 임원의 임기	제36조 정관의 변경	
제8조 임원의 해임	제37조 해산	
제9조 이사장	제38조 잔여 재산의 귀속	
제10조 원장	제39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11조 원장의 겸직금지	제40조 산업재산권 등의 귀속	
제12조 감사	제41조 시행세칙의 제정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42조 공고의 방법	
제3장 이사회 13	제43조 준용규정	
제14조 이사회 구성	부칙	20
제15조 이사회의 기능	제1조 시행일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제2조 경과규정	
제17조 의결정족수 등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18조 서면결의	제4조 연구원관리규정 등 시효	01
제19조 의결제척사유	부칙	21
제20조 회의록	제1조 개정	
제4장 재산 및 회계 15	제2조 시행일	
제21조 기본재산	제3조 기타	
제22조 보통재산	부칙	21
제23조 재산의 관리	제1조 개정	
제24조 재산의 평가	제2조 시행일	
제25조 잉여금의 처리	제3조 기타	
제26조 경비의 조달방법	부 칙	21
제27조 회계 연도	제1조 개정	
제28조 사업계획과 예산	제2조 시행일	
제29조 결산	부 칙	21
제30조 임원의 보수 제한	제1조 개정	
	제2조 시행일	

	부	칙	22
제1조	개정		
제2조	시행일		
	부	칙	22
제1조	개정		
제2조	시행일		

정 관

2004. 12. 18제정, 2005. 02. 17허가 2007. 03. 22개정, 2007. 04. 19허가 2008. 04. 11개정, 2008. 05. 13허가 2011. 02. 24개정, 2011. 03. 15허가 2013 .06. 18개정, 2013. 07. 15허가 2015 .02. 25개정, 2015. 03. 12허가 2015 .10. 23개정, 2015. 11. 09허가 2019 .08. 26개정, 20 . . . 허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ECO융합섬유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한다) 이라 한다. <개정 15.11.09>

제2조(목적) 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첨단핵심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지원 등을통하여 섬유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익산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분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핵심기술개발, 보급 및 근접 기술지원 사업
- 2. 섬유제품생산 공정별 연구개발사업(편직, 염색, 패션디자인, 소재)

- 3. 애로기술해결을 위한 기술지도 사업
- 4. 전문고급 기술/기능 인력 양성 및 연수사업
- 5. 신제품 출시를 위한 시제품 및 소재 제조지원 사업
- 6. 섬유제품 관련 마케팅 촉진, 기술정보수집 및 분석사업
- 7. 산·학·연 공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사업
- 8. 제품의 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전시사업 등
- 9. 섬유 벤처 등 창업기업 육성
- 10.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 11.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연구원은 업체로부터 전항 각호의 사업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수수료로서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 ①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 사 장 1인
- 2. 원장(상근이사) 1인
- 3. 이 사 10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원장 포함)
- 4. 감 사 1인
- ②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

- 1.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의 과장
- 2.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 익산시 등) 주무부서의 국장 또는 본부장
- 3.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추천임원

- 4.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 추천임원
- ②당연직이사가 아닌 이사는 산업계, 학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연구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당연직이사 이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 21일안에 개최되는 이사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이사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며 그 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 전 9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서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당연직 이사인 자가 소속기관의 그 직에서 해직되었을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제8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령·정관, 임명계약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되었을 때
-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구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 3.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였을 때

제9조(이사장) ①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 ③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이사장이 결원일 때에는 이사회는 그 후임자를 지체 없이 선임 하여야 하며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 제10조(원장) ①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의 직무 정지 또는 유고시에는 연구원의 사무분장 중 인사와 복무를 담당 하는 부서의 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 ③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원장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개시한다.
- 제11조(원장의 겸직금지) 원장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회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2조(감사) ①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개최일 전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연구원의 재산상황과 사무집행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2.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3. 제1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19.08.26>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개정 19.08.26>
- 4.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하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연구원의 예산, 사업계획,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6. 중요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7.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분원,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10. 기본재산 및 적립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 11.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을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원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제1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등)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이사장과 원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당연직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서면결의) ①이사회 의결사항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연구원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하여 이사장이 지명한 출석임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 하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 1. 개최일시 및 장소
- 2. 이사 수 및 참석자 수
- 3. 회의진행 요약
- 4. 의결사항 및 찬반여부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기본재산) ①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연구원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4.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 5.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연구원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과 같다.

제22조(보통재산) 연구원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 1.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
- 3. 기타 연구원 및 개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
- 4.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금, 기타수익금
- 5. 참여 · 위탁기관의 출연금

제23조(재산의 관리) ①연구원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구원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재산의 평가) 연구원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가격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5조(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의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 1. 이월 손실금 보전
-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26조(경비의 조달방법) 연구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연구용역비,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7조(회계 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의한다.

제28조(사업계획과 예산)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9조(결산) ①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수지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당해 연도 말의 현재 재산목록, 대차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감사의 감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제한) 연구원의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

제31조(위원회 등) ①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 달성과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운영위원회
- 2. 인사위원회
- 3. 기타 연구원 운영에 자문이 요구되는 분야의 위원회
- ②위원회는 특정 사업수행 등에 있어 이사장 및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직제, 직원 및 급여

제32조(직제) 연구원은 운영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33조(직원의 임면) ①직원은 별도로 정하는 연구원의 인사 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급여) 연구원의 상근임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는 매 회계 연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하「보수규정」이라한다.)에 따른다. 또한 파견자에 대해서도「보수규정」에서 정한다.

제35조(운영규정)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1. 수수료 등의 징수결정
- 2. 자산의 운영관리 및 회계
- 3. 직제, 정원 및 직무
- 4. 인사, 복무 및 급여
- 5. 기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보 칙

제36조(정관의 변경)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 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①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연구원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 및 감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①연구원 해산 시 청산인은 재산의 상황을 조사하여 잔여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원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 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은 출연비율에 따라 기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비밀엄수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40조(산업재산권 등의 귀속) 연구원의 직원이 그 직무수행 중에 이룩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 등은 따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원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시행세칙의 제정)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제42조(공고의 방법) 연구원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또는 전문지에 게재한다. 다만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민법」중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이 주관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기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고 법원에 등기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최초로 구성되는 법인의 임원은 발기인 창립총회에서 선임한 임원으로 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연구원은 종전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권리의무, 재산, 부채, 사업, 임직원, 재규정 및 처분사항 등 일체에 대하여 이를 포괄 승계하여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연구원관리규정 등 시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관제정 으로 인한 하위규정 등은 신규 관리규정 제정 전까지 종전 재단법인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정관은 2007.03.22 개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기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기타) 이 정관 제6조(이사회 선임)의 당연직 이사는 기구 및 직제명칭 변경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정관」은 2008.04.11 개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자식경제부장관의 하기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기타) 이 「정관」제6조(이사회선임)의 당연직 이사는 기구 및 직제명칭 변경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정관」은 2011.02.24 개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법원에 등기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정관」은 제31차 임시이사회(2013.06.18.)의결에 의거 개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법원에 등기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정관」은 제38차 정기이사회(2015.02.25.)의결에 의거 개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정관」은 제41차 임시이사회(2015.10.23.)의결에 의거 개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정관」은 제57차 임시이사회(2019.08.26.)의결에 의거 개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